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세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03호)

2023.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전세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4. 18.

다. 회 부 일 : 2022. 4. 1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Ⅲ. 검토의견

1. 전세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서일준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6조제1항)	□ 전세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금융·보험 용역 등	○ (현행과 같음)
○ 여객운송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생 략)	○ 여객운송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항공기, 고속버스, <삭 제>,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생 략)

* 서일준의원안 2022. 4. 18. 발의(의안번호 15303)

□ 개정안은 전세버스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1]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 략)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 20. (생 략)

개정안은 전세버스(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2])[3]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을 위한 통근·통학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첫째, 2019년 대비 2021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건수가 약 77%(통근통학용: 14.8%, 관광용: 82.7%) 감소하였고, 전세버스 업체 수가 2019년 말 1,682개에서 2021년 말 1,634개로, 등록대수가 2019년 말 41,903대에서 2021년 말 41,167대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

2)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5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면제를 통해 이용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로 전세버스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2019년도·2021년도)]

(단위: 건수. 감소율: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건수 감소율)

연도별	월별	통근통학	감소율	관광	감소율	합계
2019년	1월	11,840	-	48,967	-	60,807
	2월	8,616	-	45,984	-	54,600
	3월	12,051	-	71,837	-	83,888
	4월	10,709	-	147,218	-	157,927
	5월	10,597	-	155,079	-	165,676
	6월	8,782	-	85,969	-	94,751
	7월	6,603	-	71,092	-	77,695
	8월	6,820	-	62,526	-	69,346
	9월	6,847	-	85,058	-	91,905
	10월	11,002	-	194,889	-	205,891
	11월	4,149	-	89,786	-	93,935
	12월	8,349	-	54,973	-	63,322
	계	106,365		1,113,378		1,219,743
2021년	1월	13,795	16.5%	6,445	-86.8%	20,240
	2월	7,239	-16.0%	5,085	-88.9%	12,324
	3월	6,263	-48.0%	6,810	-90.5%	13,073
	4월	7,974	-25.5%	14,597	-90.1%	22,571
	5월	5,764	-45.6%	18,828	-87.9%	24,592
	6월	6,562	-25.3%	17,119	-80.1%	23,681
	7월	7,606	15.2%	14,163	-80.1%	21,769
	8월	4,393	-35.6%	5,487	-91.2%	9,880
	9월	4,879	-28.7%	9,699	-88.6%	14,578
	10월	9,111	-17.2%	34,353	-82.4%	43,464
	11월	4,877	17.5%	37,496	-58.2%	42,373
	12월	12,193	46.0%	22,543	-59.0%	34,736
	계	90,656	-14.8%	192,625	-82.7%	283,281

자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둘째, 전체 전세버스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운송수단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전세버스 운행형태별 수송인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통근·통학	관광 등 일반 전세	계
2019년	230,892 (68.1%)	108,343 (31.9%)	339,236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연보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재화·용역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서 기초생활필수재화로 보기 어려운 전세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세버스는 통근·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필수 교통수단으로 보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4]. 또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

4)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합연합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세버스의 약 4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되어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전세버스 차량 등록 현황]

(단위: 대)

구 분	등 록 대 수						
	주 사무소			영업소			합계
	대형	중형	소계	대형	중형	소계	
서울	**1,503**	**654**	**2,157**	**365**	**221**	**586**	**2,743**
부산	1,154	589	1,743	121	110	231	1,974
대구	1,141	661	1,802	13	1	14	1,816
인천	**838**	**810**	**1,648**	**78**	**43**	**121**	**1,769**
광주	558	286	844	34	33	67	911
대전	527	154	681	67	27	94	775
울산	606	238	844	-	-	-	844
경기	**7,231**	**5,397**	**12,628**	**219**	**151**	**370**	**12,998**
강원	869	278	1,147	25	7	32	1,179
충북	1,221	675	1,896	76	20	96	1,992
충남	1,739	962	2,701	89	63	152	2,853
전북	1,142	762	1,904	59	28	87	1,991
전남	1,345	625	1,970	85	26	111	2,081
경북	1,695	757	2,452	59	27	86	2,538
경남	2,101	603	2,704	61	29	90	2,794
제주	1,138	629	1,767	31	-	31	1,798
총 계	**24,808**	**14,080**	**38,888**	**1,382**	**786**	**2,168**	**41,056**

주: 2022년 2월 기준
자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둘째, 과세사업자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원칙에 따라 이미 버스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바, 전세버스 운송용역의 공급을 면세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요금 인하 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면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음(이론상 '부분면세').

셋째,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과세형평을 이유로 고속버스·KTX·항공기 등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면세요구가 증가하여 과세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